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강경숙・김준형・차규근

조 국・황운하・신장식

김 윤 · 김영호 · 박은정

진선미 • 김재원 • 김문수

이해민 · 서왕진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,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코로나-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,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,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,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

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	제13조(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
의무)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	의무) ①
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	
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, 원격교	
육콘텐츠 공동 개발, 학점 교류	
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	
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	
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
	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
	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
	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
	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
	<u>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